

소매물가조사지침

1976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소매물가지침

1976

차 례

1. 물가조사의 의의	3
2. 조사품목	6
3. 품질규격 및 단위	7
가. 품질규격	7
나. 품질규격 변경	7
다. 단 위	8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9
가. 조사지역	9
나. 대상처	9
다. 대상처 선정기준	9
라. 보조대상처	10
마. 대상처 변경	10
5. 조사시점	11
6. 조사방법	12
7. 조사요령	12
8. 품질품목처리	13
9. 조사표류 기입요령	14
가. 소매가격표	14

나. 영화관람료 확인서	14
다. 방세 조사표	15
라. 납입금 확인서	16
10. 조사표류 발송	17
가. 조사표 발송	17
나. 결의 조회 응신	17
11. 명부 작성	17
가. 가격 조사부	17
나. 대상처 명부	18
부 록.	
I. 품목 및 품질규격	19
II. 조사상 문제품목의 참고사항	39

1. 물가조사의 의의

오늘날의 교환경제에서는 모든 상품의 가치는 화폐로서 표시되고 있다. 화폐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화폐의 구매력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화폐의 구매력이라 함은 화폐 한 단위가 교환에 있어서 획득할 수 있는 물자와 서어비스의 수량을 의미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일차적으로는 단일상품의 가격에 의하여 측정할 수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체의 상품의 가격을 종합함으로써 올바르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하여 특정의 개별상품의 가치를 화폐단위로서 표시된 것을 그 상품의 가격이라 하고 국민경제 내부에 있어서의 여러가지 상품의 가격을 종합한 것을 물가 또는 물가수준이라 한다.

화폐의 구매력은 물가수준의 역수로서 표현되고 화폐의 구매력의 변동은 물가수준의 변동에 의하여 판정된다. 이러한 물가수준의 변동은 물가지수로서 표시되는데, 물가지수는 일정시점의 물가를 기준(= 100)으로 하여 비교시점의 물가를 백분율로서 표시한 것이다. 화폐 소득이 일정한 경우에는 물가수준의 변동에 따라 실질소득은 변동하게 된다. 물가지수가 상승하면 화폐의 구매력 감퇴에 의하여 국민 경제생활은 궁핍하게 되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하락하면 화폐의 구매력은 증가하여 국민경제생활은 풍족하게 된다. 결국 화폐소득에 대응하는 물가수준의 변동은 국민경제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격은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거래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으로 구분되고 종합적으로는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로 구별된다. 도매가격이란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에 이르는 단계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며 거래단계별로 몇개의 도매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로부터 소매상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소매상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출하고 있는 도매물가지수를 위한 가격 자료로 쓰고 있는 도매가격은 제1단계의 거래에서 집약적으로 거래되는 가격 (Primary market price) 을 의미한다. 소매가격은 거래의 최종단계에서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유통구조가 선진국과 같이 근대화되어 있고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있다면 제1차 도매가격에서 최종 소매가격에 이르는 유통과정이 짧아지고 유통마진은 적정수준에서 결정되어 물가는 안정되며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생활에 도움을 주나, 반대로 오늘날과 같이 유통구조가 복잡해지 무질서한 경우에는 거래단계별 가격질서가 문란하여 단계적 물가수준의 변동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그만큼 국민 경제생활도 불안정하게 된다.

한편 소매물가와 는 개념상 비슷한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들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소비자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상품의 가격과 서비스 요금이 종합된 것으로서 직접 거래에서 지출한 수량과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차이는 전자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음에 반하여 후자는 서어비스 요금을 포함하여 실제로 소비자가 가계소비지출 계정에서 상품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가격을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예컨대, 기계류등을 위시한 완전생산재에 있어서는 소매가격은 형성되나 가계에서 구입하는 소비자 가격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한편 서어비스 요금은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는다. 결국 소매가격은 유통단계를 중심으로한 개념이고 소비자 물가는 가계소비지출을 중심으로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이 양자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이유는 소비자 물가지수 편제상의 실제적 필요에 기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편제, 공포하고 있는 서울 및 전 도시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용되는 가격자료는 소매가격 및 서어비스 요금인 바, 여기서 말하는 소매가격은 소매상이 판매하는 가격(판매가)이 아니고 소매상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는 가격과 서어비스 요금을 의미하고 그것은 개념상 소비자 가격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수 편제에 있어서는 동질의 가격세열이 요구되는데, 소비자 구입가격만을 추적한다는 것은 동일 가구안에서의 소비지출의 품목과 구성비가 시계열 선상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조사기술면에 있어서도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계속적으로 정확한 가격자료를 얻을 수 없으므로, 소매상의 판매가격과 소비자의 구입가격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서 편의상 소매가격을 포착하여 소비자 물가지수 편

계의 가격자료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의 소매가격자료는 실제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념상의 소비자물가에 접근하는 가격으로 조사 수집된 것이라야 한다.

2. 조사 품목

도시가지 지출중 비중이 큰 품목으로서 지출구성비가 $\frac{1}{10,000}$ 이상되며 가격변동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338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도 시 별 조 사 품 목 수

도 시	총품목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
전 도시	338	123	54	7	54	100
서울	331	120	54	6	54	97
부산	322	118	45	7	54	98
대구	319	118	45	6	54	96
인천	318	117	45	6	53	97
대전	318	117	46	6	54	95
광주	315	115	44	6	54	96
전주	317	116	46	6	54	95
춘천	309	115	42	6	53	93
청주	307	110	45	6	54	92
기타시	321	118	47	6	54	96

5. 품질 규격 및 단위

가. 품질 규격

1) 가격제열의 동질성이 절대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품목별 조사 가격의 결정적 요소인 품질규격을 확정시켜 계속적으로 동일한 품질규격에 의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질, 크기, 무제, 모양, 생산지, 상표 등 그 상품의 가격이 다양함으로 단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품질규격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규격

나)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규격

다) 생산량이 많은 규격

라) 시장출회가 많은 규격

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규격

바) 조사 지역별로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량 출회 소비되는 규격으로 상표를 지정한다.

나. 품질규격 변경

이미 지정된 품질규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의 경우 「품질규격 변동보고서」를 중앙에 제출하고 신·구 품질규격의

가격을 3회 조사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고 계속 신가격으로 조사한다.

1)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2) 생산양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예 (비닐봉지 제품이 캔 포장으로 된 경우)

3) 출회기 적어 가격의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4) 소비자 수요가 극소한 경우

5) 거래단위의 관습이 달라지는 경우

예 (국수가 1근으로 거래되던 것이 1kg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 단 위

소비자의 구매관습에 따라 일반적으로 거래 단위를 책정한 것이며 전국적으로 미터법에 의한 단위로 통일하였으니 거래 단위가 상이한 지역은 규정된 단위로 가격을 환산하여야 한다.

예

1) 600g으로 책정된 쇠고기 1근을 375g으로 판매하는 지역에서는 600g으로 환산한 가격을 조사 기입한다.

2) 콩치의 단위가 10마리인데 6마리에 100원으로 거래된다면 환산하여 167원으로 조사기입하여야 한다.

4. 조사지역 및 대상처

가. 조사지역

서울을 비롯한 31개시에서 조사한다.

나. 대상처

조사대상 전품목을 조사할 수 있는 점포 또는 업체를 선정하여 계속 조사하여야 한다.

다. 대상처 선정기준

- 1) 소비자 고객의 출입이 가장 많은 소매점포로서 가격의 대표성이 높고 계속적으로 조사가 가능한 점포
- 2) 타조사원과 중복된 점포는 제외하여야 한다.
- 3) 하나의 시장에 국한하지 말고 조사구역내에서 대표적점포를 선정한다.
- 4) 다음과 같은 점포는 조사대상처가 될 수 없다.
 - 가) 도매점포
 - 나) 도산매 점포로서 도매를 주로하는 점포
 - 다) 통신 판매점
 - 라) 중고품 판매점

마) 영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바) 중앙에서 지정하지 않은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라. 보조 대상처

보조대상처는 지정된 대상처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격조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대상점포의 특별한 사유로 이상가격이 형성되는 경우에 참고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지정대상처 외에 몇개의 보조대상처를 정하여 활용한다.

- 1)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이 일시 품절일 때.
- 2) 지정된 대상처에서 조사품목의 품질규격이 달라졌을 때.
- 3) 지정된 대상처의 일시 휴업.

마. 대상처 변경

다음의 경우에는 대상처 변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고 신규가격을 3회 보고하여 별단의 지시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본다.

- 1) 조사대상처가 폐업하는 경우
- 2) 조사대상처가 전업하는 경우
- 3) 조사품목을 취급하지 않게될 경우
- 4) 조사대상처의 상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5) 조사대상처가 대표성을 상실한 경우 등 인해 신규대상처의 선정은 대상처 선정기준에 위함은 물론 지도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조사시점

가. 순기별 조사

(매월 5, 15, 25일) : (영화관람료, 납입금, 방세를 제외한 326 품목)

나. 월별조사

(매월 5일) : 영화관람료 (2 품목)

다. 분기별 조사

(매분기 말월 5일) : 납입금, 방세 (10 품목)

조사일이 공휴일, 휴사일인 경우에는 조사일 전일에 조사하고 조사일이 명절(추석, 성탄절등)인 경우에는 2일전에 조사하되 앞당긴 조사일이 휴사일, 공휴일이면 다시 1일전에 조사한다.

예

1) 5일이 휴일이면 4일에 조사하고 4일이 명절이면 2일에 조사한다.

2) 25일이 명절이면 23일에 조사하고 23일이 휴일이면 22일에 조사한다.

6. 조사 방법

타계식 면접조사 방법에 의하여 가격을 조사한다.

7. 조사 요령

스메플가조사는 면접조사이므로 응답자와의 인간관계가 원활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본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다만, 통계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납득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가격을 알려 주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일정한 응답자를 상대로 가격을 조사한다.

나. 각 메스콤을 통하여 사전에 물가에 관한 충분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항상 조사구내의 시황에 밝아야 한다.

라. 품질규격을 숙지함은 물론 유사품중에 대하여도 많은 지식을 갖는다.

8. 품질 품목처리

다음의 경우에만 품질로 처리한다.

가. 제철적으로 완전히 시장거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나. 생산이 중단되어 재고량이 품질되고 신제품이 생산되지 않을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품질처리 하여서는 안되며 대상처에서 일시품질일 때는 조사구내의 타점포에서 조사하여 등락이 있을 때는 본 대상처의 전순가격에 등락율을 적용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비교란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예” 갈치값이 전기에 100원이었고 금기에 품질인 경우 보조대상처에서 조사하여 동일규격이 120원이고 이 점포의 가격이 전기와 변동이 없다면 같은 100원으로 기입한다.

그러나 전기의 100원에서 120원이 되었다면 같은 추세로 보아 120원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본규격과 (70cm) 다른 규격의 갈치 (90cm) 만 출회되고 있을 때 전기 기본규격이 100원이고 90cm의 가격이 150원이었는데 금기가격도 150원이라면 금기조사 가격은 100원이다. 그러나 금기 90cm 가격이 180원이라면 등귀비율이 같다고 보아 $(100원 \times \frac{180}{150} = 120)$ 120원이 금기가격이다.

9. 조사표류 기입요령

가. 소매 가격표

1) 조사가 끝나면 가격원부에 의하여 가격을 이기하고 등락차액은 하락일 경우에만 차액앞에 △ 표를 하고 등락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2) 환산가격을 기입할 때는 원미만은 반올림하여 기입하고 그 내용을 비교란에 상세히 기입한다.

3) 조사표의 숫자는 숫자란의 $\frac{1}{2}$ 정도 크기로 아랫부분에 기입하고 정정할 때는 지우지 말고 두줄로 횡선을 긋고 날인한다.

2	3	5	6		△	$\frac{2}{2}$	$\frac{0}{5}$
---	---	---	---	--	---	---------------	---------------

4) 조사표가 작성되었으면 누락 또는 오기되지 않았는지 철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5) 맨 후면의 물가동향란에는 시황과 물가동향 및 기타 참고사항을 상세히 기록한다.

나. 영화관람료 확인서

1) 극장명을 기입하고 개봉, 재개봉별로 해당란에 명기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영화명만을 기입하며 대작이나 흑백영화, 쇼는 제외한다.

3) 방화와 의화를 명확히 구별하여 금액을 기록하며 특히 합작 영화는 방화로 기록하여야 한다.

4) 상영일자에 중복 또는 누락이 없도록 한다.

5)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영화요금(입장세 포함) 이외에 각종 구호금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그것이 포함되었으면 제외시킨다.

6) 1매의 조사표에 연기하여 조사한다.

다. 방세 조사표

1) 조사구 번호와 조사가구번호를 기입하고 반드시 가구주 성명을 기입한다.

2) 품질규격에 맞는 것만을 조사하며 방이 들어거나 점포가 부설된 것은 제외시킨다.

3) 보증금과 매월 지불액의 전기가격의 착오가 없도록 대조 확인하여 기록한다.

4) 전분기와 금분기의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등락사유(새로 전입 또는 수리등)를 명백히 기입한다.

5) 삭월세의 경우 보증금 잔액은 매월 지불액의 3배를 제한 금액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기록토록 한다. 예전대 50,000원 보증금에 5,000원의 삭월세(10개월)인 경우 다음 분기에는 보증금이

35,000원이 된다.

6) 세의 종류가 동일가구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히 전분기 가격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예컨대 전분기에는 200,000원 전세로 있다가 금분기에 100,000원 보증금에 매월 5,000원씩 지불하는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에는 전세의 보증금란에 200,000원 금분기에는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란에 100,000원 매월 지불액란에 5,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그 변경사유를 등락사유란에 명백히 기재한다.

7) 대상가구를 조사원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라. 납입금 확인서

1) 소정양식에 따라 기입하되 반드시 학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2) 국민학교 육성회비는 월별로 징수를 하지만 분기별 조사이므로, 분기별로 합산하여 기록하며 등급의 총화가 100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중·고등학교의 납입금은 반드시 2학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4) 중·고등학교 육성회비란의 A는 전액면제자 B는 전액납부자이므로 둘의 합계는 100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대학교 납입금은 자율적 경비의 내용에 특히 유의하여 조사시점마다 그 내역의 추가 또는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문과계

(국문과 우선) 3년생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조사표류 발송

가. 조사표 발송

조사원은 조사시점 현재로 가격조사가 끝나면 지도원의 확인을 받아 즉시 조사표를 중앙에 우송하여야 한다. 가격보고는 신속을 요하므로 조사원의 일신상 사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조사원 휴교시에는 지도원이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나. 질의조회 응신

1) 질의조회 응신서를 접수하면 접수 즉시 내용에 따라 재조사한다.

2) 질의조회 응신기일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1. 명부작성

가. 가격조사부(가격원부)

조사원은 우선적으로 가격조사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이를 휴대하고 조사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및 대상처 또는 지정상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중앙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

으면 즉시 가격조사부를 정정 기입하여 조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상처 명부

1) 조사대상처 명부

서식에 의거 명부를 작성하되 품목수의 합계가 당해 조사구의 조사품목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대상처 명부

조사표상의 품목순서대로 기입하되 당해 조사구에서 조사하는 품목만 기입함으로 대상처별 명부의 품목종수 및 대상처수는 일치되어야 한다. 대상처 명부는 2부작성하여 1부는 중앙에 송부하고 1부는 조사원이 비치한다.

부 록

1. 품목 및 품질규격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101	쌀 (일반미)	정미	8 kg (10 l)
10102	쌀 (방출미)	정부미 또는 농협방출미	8 kg (10 l)
10103	찰 쌀	정미	8 kg (10 l)
10104	보리쌀(청 맥)	쌀보리	7.65kg (10 l)
10105	보리쌀(암맥)	비닐봉지포장3 kg들이 (농협계품)	1 포
10106	콩	백태	7.5 kg (10 l)
10107	팥	적두	8.33kg (10 l)
10108	녹 두	흑갈색	8.33kg (10 l)
10109	좁 쌀	차조	7.89kg (10 l)
10110	밀 가 루	중력분 2 등품, 세분율 77%, 22 kg들이 (상표지정)	1 포
10111	수 수 쌀	차수수	10 l
10112	밀	참밀	7.5 kg (10 l)
10201	쇠 고 기	정육	600 g
10202	돼 지 고 기	정육	600 g
10203	닭 고 기	화이트종(우)잡아서 털뽑은것 1 마리정도	1 kg
10301	조 기	생선길이 30 cm정도(우)	1 마리
10302	갈 치	생선몸길이 70 cm정도	1 마리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303	생 명 태	생선길이 45 cm정도 (우)	1 마리
10304	고 등 어	생선길이 35 cm정도	1 마리
10305	꽂 치	생선길이 30 cm정도	10 마리
10306	가 자 미	생선길이 30 cm정도, 폭 15 cm정도	1 마리
10307	전 갱 이	생선길이 20 cm정도	1 마리
10308	병 어	생선길이 25 cm정도	1 마리
10309	물 오 징 어	생선몸길이 25 cm정도	10 마리
10310	글	싱싱한것	375 g
10401	줄 비	길이 30 cm정도 10 마리	1 두름
10402	마 른 멸 치	황백색길이 5 cm정도	375 g
10403	바 른 오 징 어	몸길이 25 cm정도 (주문진 산)	20 마리
10404	북 어	황태길이 40 cm정도	1 마리
10405	새 우 젓	추젓 (고봉)	1 l
10406	멸 치 젓	완전히 삭은것	1 l
10501	달 갈	흰색, 상란 개당 50 g정도	10 개
10502	분 유	서울분유 450 g들이	1 통
10503	연 유	서울연유 397 g들이	1 통
10504	목 장 우 유	각지방 우유협동조합제품 180cc 들이 (고정배달)	1 병
10601	무 우	재래종, 입없는것, 3 개정도	3.75 kg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	규격	단위
10602	배추	호배추		3.75 kg
10603	양배추	겉껍질 벗긴것		3.75 kg
10604	파	개량파, 머리둘레 6 cm정도		3.75 kg
10605	양파	3개정도		375 g
10606	시금치	신선한것		375 g
10607	콩나물	길이 5 cm정도		375 g
10608	상치	일상치		375 g
10609	당근	2개정도		375 g
10610	호이	개량종, 애호이, 길이 25 cm정도 (개당 120 g정도)		10개
10611	호박	애호박 600 g정도		1개
10612	가지	길이 25 cm정도		10개
10613	도마도	2개정도		375 g
10614	감자	흰색 25개정도		3.75 kg
10615	고구마	15개정도		3.75 kg
10701	김	개량김, 검징색		10장
10702	미역	대장각 (180cm X 190cm정도) (상표지정)		1장
10703	다시마	달린것		375 g
10801	고추	재래종, 완전히 마른것		600 g
10802	고추가루	중가루, (고춧)		0.2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0803	마 늘	마른것, 직경 5 cm정도	1 접
10804	소금 (천일염)	국산, 1등염 (고봉)	2 l
10805	" (제제염)	국산, 고운소금 (고봉)	2 l
10806	참 깨	흰 색	1 l
10807	참 기 림	공장제품	0.18l
10808	채 종 유	유채유	0.18l
10809	콩 기 림	해표 (동방유량), 프라스틱병 900ml 들이 (KS, 표시품)	1 병
10810	들 기 림	공장제품	0.18l
10811	설 탕	백설탕 (제일제당), 비닐포장 500g 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2	구루탄산소다	신선로표 (미원), 비닐포장 100g 들이 (KS, 표시품)	1 포
10813	간 장	샘표 (진간장), 900ml 들이	1 병
10814	고 추 장	샘표, 비닐포장 500g 들이	1 포
10815	생 강	10개정도	375 g
10816	식 초	화영식초, 유리병 100ml 들이	1 병
10817	후 추 가 루	캔 포장 100g 들이 (상표지정)	1 통
10901	두 부	200g정도 (공장제품)	1 포
10902	라 면	삼양쇠고기라면, 120g 들이	1 봉
10903	국 수	공장제품	375 g
10904	당 면	순녹말	375 g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실 규 격	단 위
10905	단 무 지	왜무우	375 g
10906	마 아 가 린	소머리표 (서울스노우이카린) 225 g들이	1 개
10907	소 시 지	마미소세이지 (진주제품), 비닐포장 100 g들이	1 개
10908	통조림 (생선)	풍치통조림, 425 g들이 (상표지정)	1 통
10909	" (과실)	복숭아통조림, 425 g들이 (상표지정)	1 통
11001	사 과 (홍옥)	개 당 180 g정도	10 개
11002	" (국광)	개 당 200 g정도	10 개
11003	배	개 당 450 g정도	10 개
11004	복 승 아	백도, 개 당 250 g정도	10 개
11005	포 도	흑갈색	375 g
11006	감	홍시, 개 당 150 g정도	10 개
11007	꽃 감	꽃이당 10개	1 꽃이
11008	밤	흙은것 (고봉)	1 g
11009	밀 감	제주산, 개 당 100 g정도	1 개
11010	바 나 나	수입품	375 g
11011	참 의	은천참의 (나이론참의) 개 당 600 g정도	10 개
11012	수 박	개 당 5 kg정도	1 개
11013	딸 기	개 량중	375 g
11014	빵 (크림빵)	삼립빵, 비닐포장품, 40 g들이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11102	빵(식빵)	삼립식빵 900g	1개
11103	빵(카스텔라)	삼립표, 비닐포장품 50g들이	1개
11104	건 빵	100g들이(상표지정)	1봉
11105	드롭스	해태왕드롭스 80g들이	1봉
11106	비스켓	마미소프트비스켓(오리온표) 5개들이 (28g×5)	1봉
11107	샌베이	보통품	375g
11108	카라멜	뉴스프트카라멜(해태과자) 32g들이	1갑
11109	초콜릿	해태블랙초콜릿(28g)	1개
11110	검	셀렘민트(해태과자), 6개들이	1갑
11111	빵공	볶은것, 속점질 있는것(고봉)	1g
11112	아이스크림	해태매도플드론 100cc	1개
11113	아이스캔디	빙고아이스바, 60cc(상표지정)	1개
11201	콜라	코카콜라 190ml들이	1병
11202	사이다	칠성사이다, 340ml들이	1병
11203	쥬스	오란.씨(동아제약) 190ml들이	1병
11204	코오피	다방 판매품	1잔
11205	홍차	다방 판매품	1잔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11206	필료	다방 판매품	1 잔
11301	맥주	오비 640ml들이	1 병
11302	소주	진로 25도~30도, 360ml들이	1 병
11303	청주	백화수복, 1,800ml들이	1 병
11304	약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ℓ
11305	탁주	주류판매점 판매품	1.8ℓ
11306	포도주	진로포도주, 360ml들이	1 병
11401	곰탕	1급매중식당	1그릇
11402	냉면	1급매중식당	1그릇
11403	짜장면	1급중화요리점	1그릇
11404	우동	1급중화요리점	1그릇
11405	초밥	1급화식집, 김초밥	1인분
11406	비빔밥	1급매중식당	1그릇
20101	방세 (전세)	적벽돌 또는 목조기와집, 부엌있는 온돌방 1개	※
20102	" (월세)	"	1개월
20201	도배지	벽지, 중질지 3색도, 두루마리 54cm X 550cm	1 필
20202	창호지	전주산, 기계지, 표백 (20장)	1 권
20203	장판지 (비닐)	락기비닐제품, 8자방 1칸용, 0.8mm 124cm X 485cm	1 장
20204	" (종이)	황색 4배지, 110cm X 95cm 정도, (전주산)	1 장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20205	시 멘 트	일반용, 40 #들이 (상표지정)	1 포
20206	판 유 리	한국유리공업제품, 투명, 두께 2 mm 1평	918cm
20207	페 인 트	제비표 (건설화학제품), 흰색, 유광, 외부용 1급품 4 #들이	1 통
20208	합 석	별표 (일신산업) #31 (두께 0.23 mm) 90.9cm X 181.8cm 평판	1 장
20209	스 레 이 트	한국스레이트제품, 두께 6 mm, 72.72cm X 181.8cm, 석면, 소골 (11.5) (KS 표시품)	1 장
20301	수 저 (은)	성인용 70%은, 무게 75 g정도, 깃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2	# (스테인레스)	성인용, 주물제품, 깃가락포함, 단순무늬	1 벌
20303	스테인레스주발	성인남자용, 대접포함, 단순무늬, 두께 1.5 mm (상표지정)	1 벌
20304	양 은 술	직경 30 cm, 뚜껑제외 (상표지정)	1 개
20305	남 비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직경 18 cm (상표지정)	1 개
20306	접 시	직경 20 cm, 무늬단조 (상표지정)	1 개
20307	접	유리제품 1홀 7 작들이, 보통품 6개 (상표지정)	1 조
20308	주 전 자	선학표, 황색 알마이트프레스제품, 2 #들이 (KS 표시품)	1 개
20309	후 라 이 덴	스테인레스제품, 직경 25 cm정도	1 개
20310	호 오 피 셋 트	행남사, 홍장미무늬, 유색 6 벌, 1 등품	1 조
20311	비 킷	프라스틱제품 15 #들이 뚜껑포함 (상표지정)	1 개
20312	항 야 러	오거, 유광, 손잡이 탈린것, 뚜껑제외 40 #들이	1 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20313	세숫대야	프라스틱제품, 직경 35 cm (상표지정)	1개
20314	시계 (탁상용)	세이코 (한국시계제품), 코로나형(원형)	1개
20315	" (벽시계)	세이코 (한국시계제품), 4PC-821형	1개
20316	전기다리미	자동열조정장치 부착 100V-150W-250W-400W-500W (상표지정)	1대
20317	전구(백열등)	투명 100V-30W, 일반조명용 (상표지정)	1개
20318	" (형광등)	번개표, 주광색, 갖제외 20W, 일반조명용 (KS표시품)	1개
20319	책상	철강제품, 윗설합 1개, 편측설합 3개 (910 mm × 610 mm × 760 mm) (상표지정)	1개
20320	자전거	3000 리호, 표준형 (26인치), 라이트와 거울부착	1대
20401	텔레비전수상기	금성사제품, TV 83 S, 48.2 cm (19인치) 트랜지스터 부착	1대
20402	선풍기	금성사제품, DH3513 H형, 35.56 cm (14인치)	1대
20403	냉장고	금성사제품, GR-1640형, 용량 160 l (540 mm × 600 mm × 1,240 mm)	1대
20404	라디오	금성사제품, RM 800, 휴대용	1대
20405	전축	별표 TR-4000, 외장은 B형	1대
20406	녹음기	소니, 모델 TC-110 A (외국산), 휴대용	1대
20407	믹서	금성사제품, M-802형	1대
20408	피아노	수도피아노, 셉멜 5-5 A (전반 88개)	1대
20409	캐비닛	한국제품, 철강제양복장, 양문, 안설합 2개 (페인트도장) 121 cm × 57.6 cm × 181.8 cm	1개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규격	단위
20410	제봉틀	드레스머싱, DB형, 특객실(무광타이플)	1대
20411	석유난로	금성사제품, SR 5060	1대
20412	석유곤로	금성사제품, KC 1510	1대
20501	수도료(기본)	가정용, 전용전, 월간기본요금포함 10㎡	10㎡
20502	" (초과)	가정용, 전용전, 16㎡초과분(서울, 부산) 기타시(10㎡)	16㎡
20601	청소료 (오물수거비)	일반가정, 1등급	1개월
20602	청소료 (인분제거비)	일반가정, 18ℓ들이	1통
20603	숙박료(호텔)	올류, 독방, 침대, 1인1박, 독탕부설 식사제외	1일
20604	" (여관)	1류, 1인1박, 독방, 한식온돌방식 사제외	1일
20605	전공임	숙련공 급식제외	1일
20606	복수임	숙련공 급식제외	1일
20607	미장이임	숙련공 급식제외	1일
20608	철장이임	숙련공 급식제외	1일
20609	잡부임	급식제외	1일
30101	전기료	가정용(기본요금 및 세금포함)	30KWH
30201	연탄	소형 22공탄, 직매점 판매가격(배달 료제외), (상표지정)	10개
30202	가스	유공제품, 가정용, 프로판가스(배달료 와 통값제외)	10kg
30203	숯	참나무숯, 흑탄	100g
30301	석유	유공제품, 등유	2ℓ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30302	성 남	가정용대형(덕용), 8각형 450개피들이 (상표지정)	1 통
30303	양 초	6개들이, 갑당 300g 정도(상표지정)	1 갑
40101	마출신사복 (여름용)	제일모직, 트로피칼(울50%, 폴리에스터 50%), 인견발침	1 벌
40102	마출신사복 (겨울용)	제일모직, 순모복지(헤링본) 52S/2 인견발침	1 벌
40103	마출숙니복 (여름용)	경남모직, 실크스카치가드, 팔없는 원피 스, 나이론다후다발침	1 벌
40104	마출숙니복 (겨울용)	경남모직, 미라노저지(울30%, 카시밀 론70%), 투피스, 나이론다후다발침	1 벌
40105	마출코트	제일모직, 베니손2중직, 남자용 울100 %, 인조밍크발침	1 벌
40106	마출오바	경남모직, 여자용순모, 홉파이루 8S/2, 기모, 인견발침	1 벌
40107	한 복	성인여자춘추용, 앙고라, 상하 각각 3 겹(통시이에 망사실)기성복	1 벌
40108	학 생 복 (여름용)	남자중학생용, 상의는 TC(65%포리에스 터35%면)청색, 하의는 TR(50%포리에스 터50%레이온), 기성복4호	1 벌
40109	학 생 복 (겨울용)	남자중학생용, TR 100% 레이온발침, 기성복4호, 후색	1 벌
40110	학 동 복	지지머, 반팔원피스, 유색, 기성복 (8~9세용)	1 벌
40111	잠 바	스카이론, 춘추용, 성인남자용, 작크부착 긴팔, 나이론다후다안발침기성복	1 매
40112	와이셔어츠 (긴 팔)	사자표, 시대론 PPP(폴리에스터 65%, 면 35%)기성복	1 매
40113	와이셔어츠 (반 팔)	사자표, 시대론 LP(폴리에스터 65%, 면 35%)기성복	1 매
40114	남방셔어츠	남자성인용, 반소매, 폴리에스터 100%, 유색, 기성복	1 매
40115	내 의(면)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 하 25S, 무색 (상표지정)	1 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116	내 의 (화학사)	남자성인용, 겨울용 상. 항무색, 폴리에스터 100%. (상표지정)	1 벌
40117	런 닐 셔 어 츠	남자성인용, 반팔 38 S, 흰색 (상표지정)	1 매
40201	광 목	면 16 S × 16 S, 폭 88.9 cm, 표백 안된것 (1 마) (상표지정)	91.4 cm
40202	포 플 린	면 30 S × 32 폭 91.4 cm, 날염 (상표지정)	91.4 cm
40203	용	면 100% 경사 20 S, 위사 10 S, 폭 36 인치 양면기모, 백색 (1 마) (상표지정)	91.4 cm
40204	나 이 론 태 피 터	나이론 100%, 70 테니엘, 폭 94 cm, 유색	91.4 cm
40205	실 (재봉사)	면 100%, 30 S/3, 길이 4,500 m, 흰색 (상표지정)	1 권
40206	실 (화학사)	한일합섬, 아크릴 100%, 20 S/2, 편물용, 유색	453.6 g
40207	솜	면, 지대포장, 3 kg들이 흰색 (상표지정)	1 포
40208	이 불	지치미원단, 카시미론솜 6 편 (2 kg정도) 2 인용 (상표지정)	1 장
40301	마춤구두(남자용)	신사용, 복수현, 나이론창, 나이론굽, 검은색	1 켤레
40302	" (여자용)	숙녀용, 합성피혁 (크라리노칠피혁), 나이론창, 프라스틱굽	1 켤레
40303	교무신 (남자용)	말포, 흰색, 260 mm, 9000 백 남대 (KS표시품)	1 켤레
40304	" (여자용)	말포, 흰색, 230 mm, 9000 백 여대 (")	1 켤레
40305	운 동 화	말포, 남학생용, 면직, 흑색, 스파이크형, 230 mm	1 켤레
40306	비 신	말포, 남자성인용, 반장화, 흑색고무제폼 260 mm	1 켤레
40401	양말 (남자용)	성인용, 추동용, 나이론 20%, 면 80% 단색 (상표지정)	1 켤레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402	양말(여자용)	추동용, 나이론 100%, 단색(상표지정)	1 켤레
40403	" (아동용)	추동용, 카바양말, 나이론 100%, 단색(8~9세용)(상표지정)	1 켤레
40404	스 타 킹	반달표, 살색, 나이론 100%	1 켤레
40405	장 감	면사 23S, 흰색, 작업용, 중품	1 매
40406	백 타 이	동아견직, 폴리에스터 100%, 최신형	1 매
40407	마 플 러	남자성인용, 본건, 40S 단사(110cm×30cm), 중품	1 개
40408	모 자	중고교생용, 울 70%, 나이론 30%, 방모사 나이론안발침, PVC창	1 개
40409	가 방	남자중학생용, 100% PVC, 면접착(스폰지실합섬제품, 한일메리노일반용(2.1m×1.4m) 원사는 카시미론 100%, 경사는 면 100%)	1 개
40410	모 포		1 매
40411	수 건	타올, 면 23S, 80cm×32cm정도, 유색(상표지정)	1 매
40412	우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검은색	1 개
40413	양 산	협립제품, 흙살 10개, 2단, 나이론다후다, 유색	1 개
40414	손 북 시 계	오리엔트 19석, 남자용, 카렌다형, 방수수동태엽, 스테인레스케이스, 국내조립품	1 개
40415	금 반 지	순금(99%), 3.75g, 무늬단조(수공임포함)	1 개
40416	핸 드 백	비닐제품, 미혼여성용, 최신중형, 보통장식, 단색(상표지정)	1 개
40417	안 경	남자보안용, 국산테(세루로이드 6mm), 국산알(슈퍼젤), 갈색	1 개
40501	세 탁 비 (양 복)	신사복상. 하, 드라이크리닝(다림질포함)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40502	세 탁 비 (와이셔츠)	데드론제품 (다림질포함)	1 회
40503	재 봉 료	부인용, 춘추용한복 (화학사웃감, 3겹) 수공임.	1 벌
40504	의복수선료	신사복, 짜집기, 3cm정도	1 회
40505	신 수 선 료	남자구두 1 켤레, 뒤틀수선료 (재료값 제외)	1 회
40506	구 두 닦 이	남자용단화, 검정색, 보통광택	1 회
50101	영 양 제	비타민 (유유산업), 100정들이	1 병
50102	감 기 약	노바킹당의정 (동광약품), 10정들이	1 병
50103	소 화 제	부채표활명수 (동화약품), 60ml들이	1 병
50104	항 생 제	메트라싸이클린 (중근당제약) 250mg	10캡슐
50105	해독감장제	박카스 D (동아제약), 100cc들이	1 병
50106	구 충 제	비페라 (중근당제약) 12정들이	1 병
50107	위 상 약	미큐름액, 15cc들이	1 병
50108	진 찰 료	증합병원, 보통초진료	1 회
50109	입 원 료	증합병원, 일반환자 2등 (식사포함, 약대제외)	1 일
50110	분 만 료	증합병원, 2등, 2박3일입원, 경산, 정상분만 (식사포함, 약대제외)	1 회
50111	엑스-레이 촬영 료	증합병원, 흉부, 직접, 보통, 단순촬영 (14인치×14인치)	1 회
50201	라 누 (회장)	코티넬콜비누 8,000번 (동산유지)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202	비 누 (세탁)	일반가정용, 2호350g, (상표지정)	1 개
50203	" (가루)	럭키하이타이, 비닐포장 100g들이	1 포
50204	치 약	럭키치약, 100g들이 (중형)	1 개
50205	칫 솔	럭키 뉴777, 성인용 (케이스포함)	1 개
50206	화 장 크 림	모노바바니싱크림, 60g들이	1 갑
50207	화 장 분	모노바 밀크파운데이션, 35g들이	1 갑
50208	화 장 수	모노바아스트린센트로손 120ml들이	1 병
50209	포 마 드	오스카향수포마드, 60g들이	1 갑
50210	화 장 지	장미표 1번 (원통형), 흰색	1 개
50211	살 충 제	에프킬러S 에어로졸 (삼성제약), 수압 분구식 300ml들이	1 통
50212	이 용 료	성인 (착유포함), 중류	1 회
50213	미용료 (고데)	성인 여자 (가발·샴푸제외), 중류	1 회
50214	" (파마)	성인 여자, 보통파마 (체리 파마약), 중류	1 회
50215	목욕료 (성인)	남자, 일반대중탕	1 회
50216	" (아동)	일반대중탕 (7세이하)	1 회
50301	버스료 (좌석)	성인, 시내 1구간	1 회
50302	" (일반)	성인, 시내 1구간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303	버스타 (고속)	서울-부산간, 성인, 편도	1 회
50304	택시료 (기본)	시내, 기본요금 (2 km)	1 회
50305	" (초과)	2 km 초과요금	1 회
50306	기차료 (완행)	대인, 40 km	1 회
50307	" (급행)	대인, 보통급행, 40 km	1 회
50308	항공료	대한항공, 서울 부산간, 성인, 편도	1 회
50309	선박료	국내, 여객운임, 성인, 3 등실, 20 해리	1 회
50401	전화료 (기본)	가정용 1대, 시내통화료	1개월
50402	" (도수)	가정용, 시내통화료 200 회	200 회
50403	우편료	국내, 필서봉서, 20 g 이내	1 통
50404	전보료	시외, 보통, 10 자 이내	1 회
50405	소포료	국내, 6 kg 까지	1 개
50501	교과서 (국민학교)	4 학년 1 학기용, 국어, 산수, 사생, 자연	4 권
50502	교과서 (중학교)	영어 (중1, 미들스쿨) 수학 (중1, 중등 수학)	2 권
50503	교과서 (고등학교)	영어 (고1 하이스쿨), 수학 (고1, 현 대공통수학-이성현 저)	2 권
50504	국민학교 옥설회비	가구당 1인, 재학생분	1 분기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505	남 입 금 (공중)	2학년생	1 분기
50506	남 입 금 (사중)	2학년생	1 분기
50507	남 입 금 (공교)	2학년생	1 분기
50508	남 입 금 (사교)	2학년생	1 분기
50509	남 입 금 (국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제 3학년생	1 학기
50510	남 입 금 (사대)	종합대학 또는 단과대학문과제 3학년생	1 학기
50511	남 입 금 (전문)	4학년생, 기계과	1 학기
50512	유 지원 비	보육료 및 기성회비	1 개월
50513	참 고 서	옛센스영 한사전 (민중서관), 3×6판, 인도지, 비닐표지, 1,680페이지	1 권
50514	학원비(입시)	대 학입시준비 영어단과반, 1일 100분 강의 보통강사수강료	1 개월
50515	학 원 비 (자동차)	지정 자동차학원, 본과영입반 8주과정 수 강료(입학금, 책값, 면허수수료제외)	1 개월
50516	학 원 비 (양재)	재 단과, 4개월과정 수강료(입학금제외)	1 개월
50517	도 서 관 비 (국공립)	성인, 일반 열람실	1 회
50518	도 서 관 비 (사설)	학생, 일반 열람실	1 일
50601	볼 펜	모나미 153, 청남색, KS 표시품	1 개
50602	인 필	동아연필 HB1000, 향나무(지우개부착), K S 표시품	1 다 스
50603	란 년 필	파일롯트 E형(W400)	1 개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604	노 트 (배)	모조지 16 매 (표지포함), 18.6 cm × 26.5 cm (상표지정)	1 권
50605	* (소)	겉지 14 매 (표지포함), 14.5 cm × 20.5 cm (상표지정)	1 권
50606	도 화 지	마니라지 (45.4 kg) 1면사용, 수채화용, 8 절지	1 장
50607	서 험 지	겉지 16 절지	20 매
50608	봉 투	모조지제품, 골봉투, 흰색	10 장
50609	크 레 파 스	모니미 왕자표, 굵은파스 (6 cm 정도) 22 색들이	1 갑
50610	잉 크	청색, 파일롯트잉크, 30cc 들이	1 병
50701	신문구독료	동아일보, 가정배달	1 개 월
50702	주 간 지	주간한국, 32면	1 부
50703	월 간 지 (여성지)	주부생활 (당월분)	1 권
50704	월 간 지 (대중지)	아리랑 (당월분)	1 권
50705	월 간 지 (아동지)	소년중앙 (당월분)	1 권
50706	월 간 지 (종합지)	신동아 (당월분)	1 권
50707	월 간 지 (문예지)	현대문학 (당월분)	1 권
50708	영화관람료 (방 화)	총천연색, 상영시간 100분정도, 입장세포함 (각종구호금제외)	1 회
50709	영화관람료 (외 화)	"	1 회
50710	멀리비결 시 청 료	1 대	1 개 월
50711	고궁입장료	고궁 및 유원지, 성인	1 회

품목번호	품 목 명	품 질 규 격	단 위
50712	사 진	명함판, 흑백색 3~4매 (상류사진판)	1 조
50713	필 림	코닥, 폭 35mm, 20장촬영용, 국내재본	1 통
50714	장 난 감	유색, 고무공, 직경 18cm정도	1 개
50715	삼 륜자전거	어린이 4~5세용, 1인용, 보통장식	1 대
50716	운 동 기 구	축구볼, 보급용 (중양구), 소가죽 32피	1 개
50717	배 요 트 판	IP형, 지름 27cm 스테오, 국내일류 가수신곡최신취입	1 장
50801	담 배(한 강)	12개들이 (필터)	1 갑
50802	"(청 자)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3	"(비틀기)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4	"(파고다)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5	"(남대문)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6	"(환 회)	20개들이 (필터)	1 갑
50807	"(아리랑)	"	1 갑
50808	"(명 승)	10개들이 (필터)	1 갑
50809	"(새마을)	20개들이	1 갑
50810	"(개나리)	"	1 갑
50901	행정수수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발급	1 통

품목번호	품목명	품질	규격	단위
50902	행정수수료 (호적초본)	호적초본	발급	1 통
50903	행정수수료 (인감증명)	인감증명원	발급	1 통
50904	행정수수료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1 통

II. 조사상 문제 품목의 참고사항

쌀~상품과 중품을 명확히 구별하여야 하며 대상처별로 등급이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계열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품질 규격을 조사할 것.

어개류~생선의 길이에 상당하는 무게를 알아 두었다가 중량 단위로 판매하는 대상처의 올바른 가격을 포착할 것이며 길이가 다른 경우에는 중량을 중심으로 가격을 환산할 것.

목장우유~협동조합에서 고정적으로 배달하여 주는 가격을 조사하여야 하며 계과점이나 일반점포에서 판매하는 가격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미역~지역별·산지별로 가격이 상이하나 반드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조사할 것.

마늘~규격에 맞는 접당 무게를 확인하여 조사할 것.

예컨대 3.75 kg(1관) 단위로 판매되는 경우 접당 무게를 파악하고 있어야 환산이 가능함.

꽃감~반드시 꽃이로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할 것이며 짚으로 묶어서 포장한 것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과자류~항상 상표와 중량을 확인하여 조사할 것이며 특히 감량에 유의하여 그 사유 및 가격을 정확히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밀 크~묵장 우유되는 구별되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약 주~용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병술을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방 세~방세조사의 대상은 방이므로 가구주의 변동이 있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세의 종류가 변경되어도 대상가구를 변동하여서는 안된다.

예컨대 동일한 방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경우나, 전세가 월세(보증부월세, 삭월세, 월세)로 변경되어도 대상처는 변동되지 않으며 변동된 사실을 그대로 기입하여 보고한다.

즉 A가 전세로 200,000원에 세들어 있다가 전출하고 B가 250,000원에 전세 입주하면, 조사표에는 가구주 성명을 B로 기입하고 50,000원 인상된 것으로 보고 동락사유란에 A가 전출하고 B가 전입한 사실을 기입하며, 200,000원 전세로 있던 A가 보증금 100,000원에 월세 5,000원으로 보증부월세로 변경되었다면, 전분기는 전세 200,000원으로 기입하고, 금분기에는 보증부월세란에 보증금 100,000원 매월 지불액 5,000원으로 기입하고 동락사유란에 세의 종류변경을 기입하여야 한다.

° 수도료~가정용은 1972년부터 초과사용량에 대하여는 누진율을 적용하므로 요금환산에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의 경우를 예시하면, 인상전에는 기본수량 10㎡에 기본요금 80원, 초과사용량 1㎡당 10원으로 기본료 80원, 초과료 160원(10원

× 16 ㎡)이었으나, 인상후에는 기본료가 10 ㎡에 150 원, 초과사용료는 11~20 ㎡의 경우 1 ㎡당 15 원, 21~30 ㎡의 경우 1 ㎡당 20 원이므로 기본료는 150 원, 초과료는 270 원 (15 원 × 10 ㎡ + 20 원 × 6 ㎡)이 된다.

또한 수리비, 시설비, 기타, 영선료 부과정수는 제외된다.

오물수거비~지방별로 1등급(월수입, 재산세, 건평등 택일)을 명확히 파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호텔로~올류한 외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관광호텔이 아니고 내국인이 주로 투숙하는 호텔을 말한다.

연 탄~가정용 소형 구멍탄으로서 적매점 점두가격을 조사한다.

배달료는 거리의 원근 및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조사가격에서는 제외된다.

남자구두~복수혁이라 함은 인조합성 피혁이 아닌 우피를 말하며 기성화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

비 신~단주나 작크가 부착되지 않은 반장화를 조사하여야 한다.

손목시계~남자용 오리엔트 19식으로서 요일과 날자가 나오는 것으로(카렌다형) 수동이며 국내 조립품을 조사한다.

금반지~순도(99%)를 유지하며, 수공임을 포함하므로 단순한 무늬가 있는 것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수공임의 변동에 유의하여야 한다.

피루류~피복 및 장신구는 유행에 민감하므로 특히 상표, 원료의 성분(수, 데니엘, 혼방의 경우 혼합비율등) 색채, 형태 등에 항상 유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수(手)와 데니엘(Denier)은 실의 굵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는 면직·모직물에 데니엘은 생사·나이론 직물에 사용된다.

수(S)~면직물의 경우는 원면 1파운드(453.6g)로 길이 840야드(YDS)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하며, 모직물의 경우는 1kg의 원모로 1,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실의 굵기를 말한다.

데니엘~나이론 섬유 1g으로 9,000m의 실을 뽑았을 때의 굵기를 말하며, 생사 450m 무게가 0.05g일때 1데니엘이라 한다.

진찰료~전문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보통 초진료를 조사한다.

따라서 특진료, 새진료를 조사해서는 안된다. 이하 입원료, 분만료, 엑스-레이 촬영료도 같은 종합병원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입원료~일반환자란 응급의 특수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아니며, 병원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포함하되 병원에서 별도로 계산하는 약값은 제외한다.

분만료~경산이란 조산이 아닌 것을 말하며, 정상분만이란 특수진료를 요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특별히 투입되는 약값은 제외되며, 다만

지혈제 등 분만료와 별도로 계산되지 않고 모든 산모에게 일률적으로 투입되는 약값은 분리 포착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외되지 않는다.

또한 2박 3일 입원이란 정상적인 산전, 산후 처리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입원료는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

간혹 전문병원에 따라서는 남아, 여아의 분만료에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등을 두지 않으며, 만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있다면 남아분만에 대한 산모측의 팀으로 간주하며 그 차액은 고려될 수가 없다.

이용료~중류라 합은 관광호텔 등의 특수 이발소가 아닌 일반 이발소를 말하며, 보통의 착유를 포함하며 특수 서어비스(손톱손질, 맞사아지 등)로 인한 팀은 해당 업소가 이용료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고려될 수 없다. 이하 미용료도 같다.

목욕료~터키탕, 사우나독크 등 특수 목욕탕이 아닌 일반 대중탕을 조사대상으로 남자 목욕료를 조사하는데 특히 아동의 경우 7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나, 지방에 따라 성인, 아동, 유아를 각각 구별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가장 가까운 요금을 조사한다.

예컨대 13세 이상을 성인, 6~12세까지가 아동, 5세 이하가 유아로 구분되면 유아의 목욕료를 조사하며, 10세 이상을 성인, 5~9세까지가 아동, 4세 이하가 유아이면 아동의 목욕료를 조사한다.